

##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변호사자격 보유자 대상 일반직공무원(6급)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

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변호사자격 보유자 대상 일반직공무원(6급)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.

2022년 8 월 19일

국 회 사 무 처 장

### 1 채용분야 및 인원

직 급	○ 행정주사(6급)
업무내용	○ 의안 및 청원 등의 심사, 법률안·국회규칙안의 체계·형식과 자구의 심사, 국정감사·국정조사,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된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 ○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 등에서 요구한 법률안의 기초 및 법제 지원 ○ 국회와 관련된 법인의 관리 및 소송수행 지원 등 일반행정업무
인 원	○ 6명

### 2 시험일정

구 분	일 시	비 고
공고 및 원서접수	8. 19.(금) 공고 시 ~ 9. 2.(금)	국회채용시스템 <u>(관련서류 우편제출)</u>
서류전형 합격자발표	9. 8.(목)	국회채용시스템
필기시험	시 험	9. 14.(수)
	합격자발표	9. 16.(금)
면접시험	9. 21.(수)	
최종합격자 발표	9. 23.(금)	국회채용시스템

※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# 3 응시요건

구 분	내 용
결 격	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○ 「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연 령	○ 만20세 이상인 자(2002. 12. 31.이전 출생자)
자격요건	○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

※ 응시요건의 충족 여부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

### 4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으로 접수)

- 접수기간 : 2022. 8. 19.(금) 공고 시 ~ 2022. 9. 2.(금) 17:00
- 접수방법 :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
(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)
- 응 시 료 : 7,000원(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·카드결제·휴대폰 결제 중 선택)
- 기 타 :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계좌이체·카드결제·휴대폰 결제 비용)이 소요되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(JPG)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할 것
- 접수취소 : 원서접수기간에만 가능
- 응시번호 확인 : 국회채용시스템-원서접수-접수증/응시표출력 (9. 2.(금) 17:30 이후)
- **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.**

## 5 관련 제출 서류 (등기우편으로 제출)

- 자기소개서 1부(첨부양식, A4용지 1~2장 분량)
- 직무수행계획서 1부(첨부양식, A4용지 5장 내외)
-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학위·경력·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(아래 표 참고)

연번	증빙서류	비고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법연수원 수료증 1부(사법연수원 수료자에 한함)</li> <li>○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(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함)</li> <li>○ 변호사 시험 합격증명서 1부(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함)</li> </ul>	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수분야 자격증명서(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) 1부(해당자에 한함)</li> </ul>	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위별 졸업(학위) 증명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</li> <li>- 원서접수 시 기재한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대표전화가 아니라 해당기관의 증명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</li> <li>※ 외국학위의 경우,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, FAX, 이메일주소,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(필요시 학위취득 조회를 위한 본인의 별도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
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근무처별로 근무기간, 직위(급)를 정확히 기재</li> <li>※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기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</li> </ul> </li> <li>- 회사가 폐업·파산·합병 등으로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</li> </ul> </li> </ul>	
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종 학위논문 1부(사본 가능, 해당자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또는 세부요약문(연구목적, 연구내용 및 결과의 활용도 등을 1~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) 1부 추가 첨부</li> </ul> </li> </ul>	
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위연구논문(석사학위 이상)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(첨부양식, 해당자에 한함)</li> </ul>	
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원본(또는 사본) 1부 (해당자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연구실적물 :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(등재 후보지 포함)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,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</li> </ul> </li> </ul>	
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민등록초본 1통</li> </ul>	
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타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(소지자에 한함,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제출)</li> <li>-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</li> </ul> </li> </ul>	

※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.

※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,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·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「국회공무원 임용시행규정」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.

※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### ○ 제출 방법

- 증빙서류는 연번에 맞추어 제출하되, **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것**
-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표지에 채용예정분야를 반드시 기입할 것 (예 : 변호사자격 보유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- 행정주사)
- **접수마감일자(9. 2.)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**
- 주소 : (07233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(여의도동) 의원회관 811호  
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

## 6 시험방법

### ○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학력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.
-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### ○ 필기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.
- 현안 및 정책 주제에 관한 검토·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능력 등을 검정하며,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.
- ※ 필기시험의 세부적인 방법 및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공고함.

### ○ 면접시험

-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.
- 인품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검정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.